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10호

건설신기술 지정

‘온도분포측정장치를 이용한 저수지에 적용되는 누수탐지기술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(주)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		
	주 소	우5138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6(명서동)		
	전화번호	055-237-2671	팩스번호	-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(주)소암컨설팅		
	주 소	우340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5로 43-15(관평동)		
	전화번호	042-863-2830	팩스번호	042-863-2834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993호
- 명 칭 : 온도분포측정장치를 이용한 저수지에 적용되는 누수탐지기술
- 기술분야 : 토목 > 수자원 > 댐

○ 신기술의 내용

이 신기술은 누수가 의심되는 저수지 제체 하류 사면내에 온도분포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지표 및 지중온도를 측정하고 산출장치를 통해 온도변화를 산출하며, 대조지역과의 편차를 이용하여 누수의 위치 및 흐르는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저수지 중 흠뎀 제체 하류 사면의 누수를 조기 탐지하는 기술이다.

○ 신기술의 범위

얕은 심도 온도분포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누수 예상 위치를 판단하고 탐사측선을 결정한 후 탐사측선에 센서 삽입용 파이프를 매립하고 파이프 안에 다점온도센서 파이프를 삽입하여 산출장치를 통해 지표 및 지중의 온도변화를 산출하고 산출결과와 대조지역과의 온도 편차를 통해 저수지 중 흠뎀 제체 하류 사면의 누수를 탐지하는 누수탐지기술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로부터 8년

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
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신기술품셈

- 해당 없음

5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